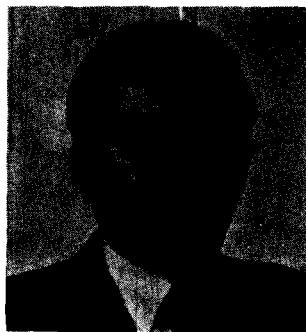


先進諸國의 酒類管理政策과 販賣免許制度



白 樂 昇

(社團法人 大韓酒類工業協會 · 會長)

■ 目 次 ■

- I. 머리말
- II. 諸外國의 酒類管理 政策
 - 1. 序
 - 2. 政府 專賣制度
 - 3. 價格規制
 - 4. 免許制度
- III. 諸外國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 1. 美國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 2. 프랑스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 3. 영국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 4. 서독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 5. 캐나다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 6. 이태리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 7. 스웨덴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 8. 스위스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I. 머리말

現在 政府에서는 稅制改編案을 마련하여 稅制發展 審議會에 이를 提示하고 檢討를 進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酒類業界와 直接 關聯이 있는 消費稅制度補完中 酒稅制度改善을 위한 論議는 現行의 酒稅率 문제와 免許 및 原料配定의 문제, 그리고 規制위주의 現行 酒類管理制度의 改善으로 集約되고 있다.

어차피 民主化와 自律化的 國內的 움직임과 先進諸國의 市場開放壓力이 몰고 올 심상치 않은 狀況 속에서 우리 酒類業界가 變化 속에서 適應하고 自生하며 共生하는 것이 焦眉의 課題이자 死活의 문제인 만큼 모름지기 酒類業界는 여기에 對處하는데 더불어 努力하는 슬기가 모아져야 할 때이다.

最近 KDI 院長으로부터 美國의 酒類管理制度라는 最新版 冊字를 얻어 이를 읽어보고 느낀 것이 先進諸國에 있어서의 酒類管理制度는 共通的으로 專賣내지는 免許制度이며, 經濟, 保健, 그리고 社會的 關心事에 依한 여러 側面을 基礎로 해서 定해져 있으며 酒類濫用으로부터 發生되는 第3者 또는 社會一般에 發生하는 費用에 對處하기 為해 制定되어 있는 것 이 特徵이라고 느꼈다.

專賣나 免許制度의 目的是 알콜의 使用에 있어 생기는 害惡 및 損失을 最少限으로 하는데 있으며 各國別로 優先順位는 다르지만

- 國民保健
- 政府財源 確保 및 酒類對策에 必要한 財源調達

等이 根幹이 되어 있다.

이러한 時機에 先進諸國의 酒類關係立法 趣旨 및 基本精神, 그리고 制度的 裝置 等을 살펴보고 우리의 現實 여건과 比較해 보는 것이 대단히 重要하다고 느껴서 日本의 酒類行政制

度研究會에서 發行 한 “美國의 酒類管理 制度 (Alcoholic Beverage Contro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中 諸 外國의 酒類管理政策 ('88年 4月) 을 直譯 紹介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酒類產業의 現位置를 把握하고 將次 한 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競爭이 甚해질 것으로 展望되는 此際에 本 寄稿가 우리 酒類會員社에 적으나마 參考資料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II. 諸 外國의 酒類管理政策

1. 序

世界 各國에서는 酒類의 製造 및 流通에 關한 여러 種類의 管理法이 制定되어 있지만 立法의 基礎가 되는 政策에 대해서는 通常 明確하지 않고 설사 明示가 되었다 하더라도 抽象的用語로 表示되어 있을 뿐이다.

酒類管理立法政策을 經濟, 保健, 기타 社會關心事에 關係되는 여러 側面을 基礎로 해서 작성한 國家도 있다.

各國의 酒類管理法의 一部는 酒類濫用에서 생기는 外部 不經濟(第3者 또는 社會一般에서 發生되는 費用)에 對處하기 為해서 制定되어 있다.

蘇聯邦에 있어서 最近의 法改定은 이러한 社會的 코스트를 減少시킬 目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핀란드 알콜專賣法의 目的是 알콜의 使用에서 發生되는 害惡 및 損失을 最少限으로 막는데 있다. 이러한 目的의 實現手段의 하나로 핀란드에서는 經濟性을 確保하고 나아가 酒類의 總消費量을 增大시키지 않는 範圍에서 酒類의 總消費量中 低度의 酒類比率을 增加시키고자 하고 있다.

스위스는 極히 簡明하고 또한 약간 詳細하

다고도 할 수 있는 酒類政策을 推하고 있다.

스위스聯邦 알콜法의 目的是 다음과 같다.

(a) 蒸溜酒의 消費量을 減少시켜 國民의 健康을 지킨다. 이를 為해

- 稅制에 의한 蒸溜酒의 價格을 引上한다.
- 聯邦 알콜 管理廳에 의한 蒸溜裝置의 買入으로 그 數를 減少시킨다.
- 果實 및 薑類의 알콜製造 目的外의 利用을 優待하여 蒸溜酒의 製造量을 抑制시킨다.

(b) 酒類對策 等으로 必要한 財源을 酒稅로 確保한다.

蘇聯聯邦은 近年 極히 嚴格한 酒類濫用問題對策을 採用하여 多面的인 酒類管理政策을 수행하고 있다.

蘇聯의 酒類管理政策은 1985年 5月에 公表되어 같은해 6月부터 實施되고 있지만 社會的, 經濟的, 法的 및 保健上의 모든 關聯事項을 取扱하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프로그램에는 報導機關에 의한 反알콜캠페인의 實施, 全國的인 民間禁酒團體의 設立, 特定의 酒類濫用을 犯罪로 하는 法改定, 酒類의 販賣와 調達의 嚴格한 管理 및 現行法令의 보다 嚴正한 執行 等을 包含하는 것이다.

2. 政府專賣制度

酒類의 政府專賣制度의 採用理由는 各國이 相異하다. 酒類를 管理하는 目的 또는 財源을 確保하는 目的으로 專賣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酒類產業에 있어서 民間의 營利追求의 誘因을 排除하는 것 또는 單純히 社會的 酒類製造量을 管理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酒類專賣制로서 酒類의 製造 및 輸入에서부터 全 酒類消費者의 最終的 販賣까지 모든 過程를 對象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製造

로부터 消費까지의 한 過程을 또는 特定의 酒類를 對象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一般的으로 19世紀末 및 20世紀初에 強力한 禁酒運動이 展開된 諸國에서 가장 嚴格한 政府 專賣制가 採用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의 政府專賣制는 다음의 것을 除外하고 製造, 輸入 및 流通의 모든 것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단 1個社만이 國有化되어 있지만 麥酒의 釀造는 民間企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民間企業이 釀造하는 低度의 麥酒는 政府酒販店이 아니라 免許販賣店에서 販賣된다.

酒類의 店舖內 消費를 行하는 料食業所에의 酒類販賣도 通常 免許販賣店에서 行해진다.

핀란드에서는 專賣公社가 特定의 料食業 레스토랑 等도 經營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專賣制도 스웨덴 및 핀란드와 類似하지만, 蒸溜酒는 專賣公社 때문에 民間企業이 製造해서 公社에 納品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에서는 酒類의 製造 및 販賣가 工業用을 除外하고는 全部 國有化 되어 있다. 1982년까지 형가리도 같았으나 現在는 麥酒의 釀造가 專賣制의 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이들 3國에 있어서의 消費者로의 酒類流通 經路는 北歐 3國보다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및 美國의 一部州에서는 制限的 專賣制를 採用하고 있다. 專賣制의 州에서는 酒類製造는 民間企業에 의하지만 酒類의 輸入 및 瓶入은 專賣로 이루어 진다. 蒸溜酒의 都賣 및 家庭消費者를 위한 小賣販賣는 반드시 酒類專賣局에 의해 行해진다. Wine도 通常 같이 取扱된다.

일부 州에서는 高度의 Wine은 專賣局에서 低度의 것은 免許 販賣店에서 취급한다. 麥酒의 流通規制는 보다 緩和되어 있지만 州마다

다른 것이 特徵이다.

그 外에 專賣制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는 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프랑스이다. 이들 諸國의 專賣制는 正確히 表現하자면 同一形態로 運營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專賣業者가 專賣機關에 알콜을 販賣하고 다음 專賣機關이 이를 第2次 加工業者 또는 最終製品인 경우는 都·小賣業者에게 販賣한다는 一般的 形態이다. 이들 諸國中 스위스는 特殊한 경우이며 스위스에서는 果實以外의 原料를 使用하는 알콜의 製造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3. 價格規制

酒類의 價格規制를 施行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酒類의 價格規制 形態는 各國이 相異하다.

캐나다에서는 Wine 및 蒸溜酒(大部分의 州에서는 麥酒에 對해서도)의 價格決定 承認을 위한 手續節次가 定해져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麥酒, Wine, 蒸溜酒에 關해서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麥酒에 關해서 價格은 나라가 定하는 가이드라인에 合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監視하는 價格 監視制가 設置되어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핀란드, 폴란드 및 蘇聯에서는 酒類價格을 國家가 公定하고 있다. 형가리에서는 麥酒 및 蒸溜酒의 價格은 公定하지만 Wine價格은 市場價格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酒類價格은 原則上 政府規制 對象은 아니지만 特定 料食業所의 麥酒 및 蒸溜酒의 販賣價格은例外로 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1980年까지는 酒類價格이 政府規制의 對象이었지만 그 이후 市場價格에 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캐나다는 일부의 規制緩和가 採用되기 시작하고 있다. 最近의 2~3年内에 西部의 大部分州에서 免許 販賣店에 있어서의 麥酒 價格規制

制의 廢止 또는 緩和가 施行되고 있다. 이와 함께 近年 西部諸州는 專賣店에서 販賣 하는 價格規制를 停止 또는 緩和시키고 있다.

4. 免許制度

事實上 酒類의 製造로부터 最終消費者까지의 販賣에 있어 酒類製造 및 販賣에 關聯되는 모든 法人 및 個人은 專賣制가 採用되고 있지 않는限, 特別의 免許를 必要로 하지만 여기서는 店舗內 消費 및 店舗外 消費를 위한 小賣場의 免許制度만을 說明한다.

酒類의 流通에 關與하는 者는 빠짐없이 酒類販賣를 위한 特別한 免許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一般的 原則이지만 약간의例外도 있다. 例를 들자면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칼에서는 一般營業免許에 依해 營業을 하고 있는 販賣場은 一般免許로 酒類의 家庭消費用 販賣를 할 수가 있고, 日本 및 포르투칼에서 レストラン 및 바이는 酒類取扱을 위한 特別免許는 必要치 않다.

폴란드에서는 麥酒 및 Wine은 食品販賣免許를 받은 販賣店에서 家庭消費用으로 팔고 있다. 店舗內 및 店舗外 消費를 위한 酒類販賣免許에 關하여 各種의 免許를 設定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만 알콜度數에 따라 取扱上의 差異를 定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店舗內 消費小賣免許) 料食業所 酒類

取扱免許

레스토랑 等의 酒類提供을 行하는 施設에 對해 販賣되는 酒類를 區別하지 않고 店舗內消費酒類 小賣免許를 發行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영국, 프랑스, 폴란드, 럭셈브루크,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가 이러한 種類의 區別免許를 發行하고 있는 나라의 例이다. 덴

마크도 이러한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2種類의 免許를 レストラン에 對해 發行하고 있지만 그 하나는 酒類의 販賣를 認定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단, 第1種의 免許를 갖는 レストラン은 2.8度까지의 麥酒는 酒類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種類의 麥酒를 販賣할 수가 있다.

프랑스는 4種의 基本的인 免許를 發行하고 있다.

- 1) 非酒類飲料 販賣免許
- 2) 麥酒, 사과酒 및 大部分의 Wine 販賣를 認定하는 釀造酒 販賣免許.
- 3) 18度 以上의 麥酒, 사과酒, Wine, 리큐르 및 食前酒의 販賣를 認定하는 限制酒類 販賣免許.
- 4) 모든 酒類의 販賣를 認定하는 全酒類販賣免許

노르웨이에서는 取扱酒類의 種類에 依한 免許의 區分外에 알콜度數에 따르는 高度 및 低度麥酒取扱免許의 區分을 하고 있다. 全酒類를 取扱하는 者에 對해 低알콜의 酒類를 取扱하는 者를 優待한다고 하는 區分이 通常 免許制度上 設定이 되어 있으나 이로 因하여 蒸溜酒의 店舗內 消費販賣店에 對해 麥酒의 店舗內 販賣店(대개의 경우 Wine店도)의 店舗數가 많다는 결과로 되어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免許가 주어지는 施設의 所在地 또는 種類에 따라 販賣하는 酒類의 種類가 制限된다.

폴란드에서는 스포츠클럽, レストラン, 驛의 酒幕, 큰거리의 販賣店 및 勞動者호텔에서 高度의 酒類는 販賣할 수 없다.

取扱酒類의 區分을 하고 있는 諸國에서는 釀造酒의 店舗內 消費 販賣의 免許事務가 市 또는 그 以下의 地方급 事務로 되어있고 蒸溜酒의 販賣免許事務는 州 또는 聯邦급의 事務로

定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태리 및 스위스가 이러한例이다.

(店舗外消費小賣免許) 酒販店免許

家庭消費用 酒類販賣免許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에서 蒸溜酒 및 麥酒(Wine)도 範圍는 좁아지지만)가同一한 販賣經路를 通해서 販賣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例를 들자면 캐나다에서는 蒸溜酒는 항상 政府專賣酒店에서 販賣되며 Wine도 通常 같지만(단, 온타리오 州에서는 自州 Wine은 一般 販賣店에서 팔리고 있으며 케벡州에서는 食品店에서 販賣되고 있다) 麥酒는 일부의 州를 除外하고 거의 모든 州가 免許店에서 販賣되고 있다(케벡州에서는 食品店, 온타리오州에서는 釀造者 販賣店, 西部諸州에서는 호텔 免許店, 뉴화운드랜드州에서는 釀造者 販賣店).

店舗內 消費小賣免許의 경우와 같이 여러나라들은 高度의 酒類보다는 低度의 酒類販賣를 優待하고 制限을 緩和하고 있다. 이 結果 家庭用의 麥酒 및 Wine의 販賣店이 蒸溜酒店보다 많아지고 있다.

一部 나라에서 酒類의 消費를 하기抑制 위한 政策이 採用되고 있다. 폴란드에 있어서의 알콜중독撲滅對策의 하나는 麥酒만을 販賣店에서 팔고 全 酒類販賣店數를 抑制하여 減少시키는 것 이 스위스에서는 衝動買의 誘因이 되는割引販賣 및 셀프서비스를 排除하기 위해 特定의 店舗에서 蒸溜酒를 通常의 食料品으로부터 区分해서 販賣하는 것을 業務條項으로 하는 法改定이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1977年에 특히 깊은 사람들이 購入이 손쉽다는 생각 때문에 通常 販賣店에서 팔리고 있었던 미디움 麥酒를 市場으로부터 完全히 排除시켰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近年 많은 市나 其他 地方이 食料品店에서 미디움 麥酒의 販賣權을

廢止했다.

蘇聯에서는 1985年 6月에 小賣店數 및 販賣時間이 制限되고 工場 等의 부근에서 酒類販賣는 禁止되었다.

緩和策을 採用한 나라도 있다.

캐나다의 케벡州에서는 1978年에 食品店의 Wine 販賣를 認定하는 法改正을 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980年부터 1982年 사이에 酒類小賣販賣店 免許數를 約 14,000件 增加시키고 있다.

III. 諸外國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1. 美國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美合衆國에서는 2種類의 販賣制度가 設置되고 있다. 그 하나는 專賣制로서 合衆國의 18個州에서는 專賣制度를 採用하고 있다. 專賣制度下에서는 州政府가 所有하는 販賣店이 一部 또는 모든 酒類를 販賣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專賣制 採用州에서는 2個州를 除外한 모든 州에서 蒸溜酒는 이러한 政府小賣 專賣店에서 酒類販賣가 이루어지고 있다.

麥酒의 免許를 얻은 私企業에 依한 販賣는 18個州中 17個州에서 認定되고 있으며 Wine의 免許權者를 認定받은 私企業에 依한 販賣는 10個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販賣制度의 第2의 類型은 免許制度로서 免許制度 採用州에서는 酒類는 免許를 받은 私企業에 의해 販賣된다.

免許의 種類는 通常店舗內 消費小賣免許 및 店舗外 消費小賣免許의 둘로 크게 区分되어 있다. 店舗內 小賣免許 및 店舗外 小賣免許의 어떤 것도 麥酒, Wine 또는 蒸溜酒의 一部 또는 全部의 販賣가 認定되는 各種의 免許가 設定

되어 있다.

麥酒의 小賣販賣免許件數는 蒸溜酒小賣販賣免許數의 約 2倍가 認定되고 있다.

酒類小賣免許를 받은 食料品店에서 酒類를 販賣하는 것도 認定되고 있으며 46個州에서는 麥酒를 36個州에서는 Wine을 21個州에서는 蒸溜酒를 食料品店에서 팔 수 있게 許容되고 있다.

1933年에 禁酒를 確定한 聯邦憲法修訂 第18條의 廢止前에 있어서는 免許政策 및 手續에 關한 事務는 主로 市, 其他 地方政府가 掌握하고 있었다. 聯邦憲法修訂 第21條에 依해 禁酒條項이 廢止된 후 免許事務는 州政府의 管理事項으로 됐다. 단, 州의 로칼오프손 條項에 따라 39個州에서 아직 市·村等 地方政府가 免許業務에 關與하고 있지만, 그 形態는 州마다 크게 다르게 되어 있다. 로칼오프손 條項을 認定하고 있는 39個州中의 16個州는 麥酒의 禁酒에 對한 選擇權은 認定하고 있지 않으며 7州에서는 3.2% 麥酒를 禁酒로 하는 選擇權을 認定치 않고 있다.

2. 프랑스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프랑스에서는 酒類의 小賣販賣에 關해 酒類小賣販賣法(Le Code des Débits de Boissons)이 制定되어 있으며 同法에서는 5種類의 飲料와 店舖內 消費 및 店舖外 消費에 關한 이들 5種類의 飲料의 小賣販賣에 必要한 4種類의 免許에 對해 規定하고 있다.

- 第1種飲料：非알콜飲料로 소프트 드링크, 커피, 티, 밀크 및 非釀造 또는 알콜 1度以下의 果實, 野菜飲料를 包含한다.
- 第2種飲料：麥酒, Wine, 사과酒 等 釀造되었지만 蒸溜되지 않은 酒類, 알콜 1度 – 3度의 釀造된 果實, 野菜飲料.

- 第3種飲料：알콜18度以下의 第2種에 包含되지 않은 天然 스위트Wine, 리큐르 및 Wine 또는 果實을 基本으로 하는 아페라타.

- 第4種飲料：럼 및 Wine, 사과酒 또는 果實을 原料로 하는 蒸溜酒.

- 第5種飲料：其他의 酒類

店舖內 消費小賣 販賣免許의 種類는 다음 4種이다.

- 第1種免許：第1種飲料를 取扱할 수 있다.

- 第2種免許：第1種飲料 및 第2種飲料를 取扱할 수 있다.

- 第3種免許：第1種, 第2種 및 第3種飲料를 取扱할 수 있다.

- 第4種免許：모든 種類의 飲料를 取扱할 수 있다.

(1) 레스토랑用 簡易 免許

食事時 또는 다른 料理서비스에 부수하여 第1種 및 第2種 飲料의 酒類를 店舖內 消費를 위해 販賣할 수 있다.

(2) 레스터랑用 免許

食事時 또는 다른 料理서비스에 부수하여 모든 酒類를 提供할 수 있다.

店舖內 消費小賣免許가 주어져 있는 免許權者는 取扱이 認定되고 있는 飲料의 店舖外 消費小賣 販賣를 行할 수 있다.

其他의 店舖外 消費小賣免許는 다음 2種이다.

(1) 瓶入飲料販賣 簡易免許

第1種 및 第2種 飲料를 販賣할 수 있다.

(2) 瓶入飲料販賣免許

全酒類의 飲料를 販賣할 수 있다.

酒類小賣販賣法은 自動販賣機에 의한 酒類의 直接販賣를 禁止하고 있다.

小賣販賣 要件에 따라 第2種, 第3種 및 第4種의 免許數는 制限되어 있다. 第2種 및 第3種의 免許는 이를 免許 및 第4種 免許의 구분이 住民 450名 및 그 끝數에 1個免許를 넘

지 않는 市나 村에 있어서만 發行할 수가 있다. 人口統計로는 最新의 市·村 住民登録이 使用된다. 단, 大都市地域에서는 免許比率은 住民數 3,000名에 1個免許로 되어 있다. 또한 新規 第4種免許는 公共的인 展示會, 이벤트 等에 있어서의 臨時免許로서만 發生되는 것으로 定해져 있다.

나아가 新規免許 바아는 當國이 定하는 距離制限에 따라야 하고, 教會, 墓地, 病院, 學校, 스타디움, 運動施設, 形務所, 基地, 公共運輸施設, 青少年 레크레이숀 地區의 近處에 施設할 수 없다.

酒類小賣販賣法 施行前에 設置된 바아나 레스터랑은 所有者의 死亡 또는 所有者의 移轉時까지 免許基準에 反하는 施設의 營業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59年에 定해진 上記 免許基準에 依해 第2種, 第3種 및 第4種 免許條件數는相當數 減少했다. 1959年부터 1982년까지의 이들 免許의 減少數는 約 70,000件으로 28%의 減少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第1種 免許는 41,000件以上 增加하여 648%增을 나타낸다. 더우기 店舖外 消費販賣만을 認定하는 2種類의 合計免許數는 1960年부터 1975年동안 約 24,000件 16% 減少했다. 단, 이러한 減少傾向은 1976年부터 1980年 사이에 약간 완화되었으며, 특히 1980年부터 1982年 사이에 店舖外 消費販賣免許數는 約 12,000件 增加했다.

• 店舖內 消費小賣販賣免許件數

1. 第1種免許	49,652件
2. 第2種免許	7,019
3. 第3種免許	7,422
4. 第4種免許	165,943
小計	230,036

• 레스터랑 免許件數

1. 簡易免許	9,408件
2. 本免許	31,801

小計	41,209
• 瓶入飲料販賣 免許件數	
1. 簡易免許	57,871件
2. 本免許	85,324
小計	143,195

(1984年 現在)

3. 英國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英國에 있어서의 店舖內 消費를 為한 流通經路는 대단히 廣範圍하여 거의 모든 飲食店에서 酒類의 提供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飲食店의 半數以上(파브하우스 및 호텔)은 店舖外消費를 為한 小賣販賣도 認可되고 있다.

其他의 店舖外 消費小賣 販賣店으로는 一般商店, 슈퍼마켓 및 Wine 蒸溜酒 專門店이 있다.

英國에서 發行되는 免許는 다음과 같다.

1. 호텔, 파브免許

全酒類의 店舖內, 店舖外 消費를 為한 小賣販賣가 可能하고, 호텔 및 파브에 의해 發行된다. (78,719件)

2. 레스터랑 免許

全酒類의 店舖內 消費를 為한 小賣販賣가 可能하고 레스터랑 및 宿泊所에 對해 發行된다. (25,038件)

3. 클럽 免許

全酒類의 店舖內 消費를 위한 小賣販賣가 可能하고 免許를 받고 登錄된 클럽에 對해 發行된다. (33,867件)

4. 店舖外 消費小賣 免許

通常의 商店, 슈퍼마켓 및 Wine 蒸溜酒 專門店에 對해 發行된다. (45,983件)

計 183,607件

(1983年)

4. 西獨의 酒類 販賣業 免許制度

西獨에서는 酒類小賣免許 事務를 市·村에서 取扱하고 있으며 酒類小賣 免許는 限定免許 및 本 免許의 2種으로 區分되어 있다.

限定免許는 麥酒, Wine 및 非알콜 飲料를 販賣할 수 있는 免許이며 本 免許는 모든 酒類 및 飲料를 販賣할 수 있는 小賣免許이다.

西獨에서 免許上, 店舗內 消費販賣免許 (酒類取扱 レストラン 免許)와 店舗外 消費小賣販賣 免許(一般酒店免許)는 區分되지 않고 있지 만 通常 이 機能을 同時에 行하고 있는 店舗는 거의 없다.

西獨에 있어서의 酒類提供의 經路는 대단히 많으며 밀크를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麥酒를 살 수 있다고 한다.

5. 캐나다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캐나다에서는 酒類의 管理 및 販賣를 主로 州政府 事業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 각州에서는 모두 專賣制를 採用하고 있다.

專賣機關은 通常 政府酒類委員會 또는 酒類公社로 불리우며 酒類의 販賣 및 流通에 關한 모든 面에 關해 立法를 施行하는 權限을 부여 받고 있다(단, 酒類는 모두 民間企業에 依해

製造되고 있다.).

家庭用 消費用 酒類의 販賣에 對해서 各州의 專賣制의 運用은 州마다 약간 相異하다. 단 蒸溜酒는 모든 州에서 專賣販賣店에서만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州를 除外한 모든 州에서는 Wine도 같은 方法으로 販賣되고 있다. 가장 相異한 것은 麥酒의 販賣 루트이다.

國內產 및 外國產 雙方의 麥酒는 퀘벡 以外의 州에서는 專賣制를 通해서 入手可能하며 國內產 麥酒에 對해서는 專賣制 以外의 販賣루트가 設定되어 있는 州도 있다.

다음 表는 各州마다의 家庭用 酒類販賣 루트를 一覽表로 한 것이다.

專賣店 以外의 루트로서 製造者 販賣店이 있고 뉴 화운드랜드州 等 4州에서 麥酒 또는 Wine을 販賣하고 있다.

이들 販賣場은 酿造會社가 共同으로 出店하는 것 또는 各 製造場에 設置된 販賣場이며 他社의 製品은 販賣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온타리오州의 製造 Wine 販賣店은 各 Wine 酿造業者가 自己 製品의 販賣店을 차리고 있는데 他社의 Wine을 取扱하는 것도 認定되고 있다.

家庭用 酒類의 販賣루트

州	政府專賣店	製造者販賣店	食料品店	免許販賣店
뉴화운드랜드	全 酒 類	麥 酒	麥 酒	麥 酒
프린스·애드워드·아일랜드	全 酒 類	-	-	-
노브아·스코티어	全 酒 類	-	-	-
뉴 브룬스 빅	全 酒 類	-	-	-
퀘 베	蒸溜州, Wine (a)	-	麥酒, Wine	-
온타리오	全 酒 類	麥酒, Wine	-	-
마니도브아	全 酒 類	麥 酒	-	麥 酒
사스케치용	全 酒 類	-	-	麥 酒
알 배루타	全 酒 類	麥 酒	-	麥 酒
브리릿쉬 코롬비아	全 酒 類	-	-	麥 酒

(a) : 麥酒中 輸入麥酒만이 酒類公事에서 販賣된다.

뉴 화운드랜드주 및 케비코에 있어서의 食料品店은 小規模의 自營業者의 小賣店이다.

免許販賣人이란 通常 州專賣機關으로 부터 業務에 부수해서 販賣場 外 消費를 為해 麥酒를 販賣하는 免許를 받고 있는 ホテル業者이다.

販賣者 消費를 為한 酒類의 販賣루트 (料食店)는 各種의 酒類管理機關에 依해서 免許가 주어진다.

通常의 販賣루트는 다음과 같다.

(i) 麥酒(때로는 Wine)販賣도 認定되고 있다)의 販賣權을 認定받고 있는 酒店 및 파브, 알베르타州, 사스캐처용州 및 마니도브아州에서는 蒸溜酒를 販賣하는 것도 認定되고 있다.

브리티ッシュ 코롬비아州에서는 蒸溜酒의 販賣를 認定하는 法改定을 推進하고 있다.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州에서는 酒店 및 파브의 免許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ii) 食事의 提供에 부수하여 酒類의 販賣를 認定받고 있는 레스토랑, 다이닝룸 또는 다이닝라운지 通常 2種類로 區分되어 麥酒 및 Wine 만 提供할 수 있는 곳과 全酒類가 提供될 수 있는 곳으로 나누어진다.

(iii) 全酒類를 提供할 수 있는 라운지

(iv) 麥酒 및 大概의 경우 Wine 도 販賣되는 클럽 또는 全酒類를 販賣할 수 있는 클럽.

(v) 일부의 州에서는 스포츠競技場에서 麥酒 또는 麥酒와 사과酒만의 販賣를 認定하고 있다.

10個州中 9個州에서는 高度의 酒類보다는 가벼운 酒類에 對해 많은 販賣루트를 두고 있다.

일부의 州에서는 麥酒販賣免許의 年間免許手數料가 高度의 酒類販賣免許의 免許手數料보다 低額으로 되어 있다.

6. 이태리의 酒類販賣業 免許制度

이태리에 있어서의 酒類 小賣販賣免許는 公

安當局의 权限下에 있으며 公安統合法 (Testo Unico di pubblica Sicurezza)에 定해져 있다.

小賣免許는 2種類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第1의 種類는 麥酒 및 12%以下의 低度의 Wine 販賣를 認定하는 것이다.

이 第1種 免許는 市나 기타 地方當局이 發行하고 人口 400名에 1個免許만 發行하도록 되어 있다.

第2種의 免許는 “大型酒類免許”라고 불리우며 高度의 酒類販賣를 認定하는 것으로 市보다 위의 知事が 發行하고 있다.

이 免許는 人口 1,000名에 1個免許 만을 發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태리의 酒類販賣免許는 飲料店과 같은 販賣場內 消費를 為한 酒類販賣의 어느 것이든 할 수 있으나 通常 이들의 機能은 區分되고 있다.

7. 스웨덴의 酒類販賣業 免許 制度

1977年 봄, 스웨덴 議會는 將來의 酒類管理政策을 明確하게 定한 法律을 制定했다.

이것이 現在 스웨덴에서 採用되고 있는 政策의 基礎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法律은 酒類管理 政策은 社會福祉의 觀點에서 策定해야만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스웨덴 酒類管理政策의 基本目的의 하나는 酒類의 總消費量과 飲酒에 연관된 疾病 및 傷害를 減少시키는 것이다.

同時에 社會福祉政策에 依하여 酒類의 濫用問題의 克服展望이 조금이나마 改善되어 졌어야만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酒類管理 立法上, 現在 民間酒類販賣業者的 利益의 制限, 酒類入手 찬넬의 制限 및 年少者の 保護라는 3大原則이 定해져 있다.

알콜 3.5度 以下의 麥酒以外의 酒類販賣는 2개의 公社의 管理下에 놓여져 있다.

그 하나는 Vin-och Spriteentralen 公社로서 蒸溜酒 및 Wine 을 製造하고 瓶入을 하고 있다.

이 公社는 스웨덴 唯一의 都賣 및 輸入會社 이기도 하다.

第 2 의 公社는 Systembolaget 公社로서 小賣販賣社이다. (麥酒會社는 通常 麥酒를 各種 販賣루트에 販賣하고 高度麥酒는 レストラン 및 Systembolaget 公社에만 販賣하고 있다).

高度麥酒를 包含하는 모든 強度酒類의 販賣는 Systembolaget公社에서 經營하는 販賣店에서 販賣되고 있다.

販賣場에 있어서의 消費者를 為한 酒類販賣方法으로 (料食業所營業을 為해) レストラン 또는 其他の 施設에 對해 當局으로 부터 免許가 주어지고 있다.

高度麥酒 以外의 麥酒는 食料品店이 一般에게 주어지고 있다.

호텔, 食堂 또는 酒保 等에서 低度의 麥酒를 提供하는데 對한 免許는 義務條項이 아니다.

店内 消費 酒類 販賣에 關하여 1984年에는 3,200店의 レストラン에 蒸溜酒, Wine 및 모든 麥酒를 販賣하는 것을 認定하는 免許가 주어지고 있다.

1,364店은 Wine 및 모든 麥酒를 64店은 모든 麥酒만을 其他 5,174店은 中級 또는 低度의 麥酒를 販賣하는 免許가 주어지고 있다.

店外消費 酒類販賣에 關해서는 1984년의 高度 및 低度의 酒類의 取扱 區分의 結果 蒸溜酒, Wine 및 高度麥酒의 販賣를 하는 販賣場이 320場, Wine 및 麥酒를 販賣하는 販賣場이

629場, 中級 및 低度麥酒 販賣場이 12, 128 場에 이르고 있다.

8. 스위스의 酒類販賣業 免許 制度

스위스에서는 酒類의 小賣販賣 規制에 對해 州政府가 主要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으나 州를 넘어가는 蒸溜酒의 都賣 및 小賣 取扱은 聯邦法의 適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各州内에 있어서의 店內 및 店外 消費 小賣販賣는 當該州의 州法의 適用을 받는다.

또한 各州는 人口基準에 根據하는 免許件數의 制限 等 免許事務에 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聯邦政府로부터 指導를 받고 있다.

이러한 聯邦政府의 指導의 結果 醿造酒의 販賣에 對해 蒸溜酒의 店內 및 店外 消費 小賣販賣店의 販賣가 共히 많아지고 있다.

1981年 6月 30日 現在 酒類를 提供하는 24,637場의 파브가 스위스에 있다. (人口 260名에 1個免許)

또한 6,944場의 食料品店 및 藥品店이 蒸溜酒의 販賣를 하고 있다.

麥酒 및 Wine 은 5,000에서 7,000의 販賣場에서 販賣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取扱에 影響을 주는 聯邦政府의 規制措置가 蒸溜酒에 對해 採用되고 있다.

- (1) 販賣場間의 賣買의 禁止 및 路上 그리고 公共의 場所에 있어서의 販賣의 禁止.
- (2) 注文을 받기 為한 強賣的訪問의 禁止.
- (3) 自動販賣機의 使用制限
- (4) セルフ 서비스店에 있어서의 區分壁 等에 依한 蒸溜酒의 他의 販賣域으로부터의 區分.